

지정지역이외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개 등의 수입에 관한 지침서

(최종개정 2012년 1월)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대만,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제도, 하와이, 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상 (2012년 1월 20일 현재)

일본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여우·미국너구리·스컹크(이하 개 등)는 광견병예방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개만)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갖춰 일본에 도착한 개나 고양이의 계류기간은 12시간이내입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개나 고양이는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필요한 기간(180일내)의 계류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우·미국너구리·스컹크는 사전조치나 증명서 유무에 관계없이, 180일간 계류검사 합니다. 개 등은 검사결과에 따라 반송 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위에 적힌 대상지역에서 수입되는 개 등에 대해 필요한 사전조치와 상세한 절차, 일본도착 때의 수입검역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등: 개, 고양이, 여우, 스컹크, 미국너구리

수출국정부기관증명서: 이 지침서에 따라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의 추천양식(Form A, Form C)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Form A 와 Form C 는 동물검역소(<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상세한 것은 1(8)참조).

목차

1. 수입전 준비

- (1) 마이크로칩 장착
- (2) 광견병예방주사(개 또는 고양이)
- (3)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숫치 검사 (개 또는 고양이)
- (4) 항체보유후의 수출전 대기(개 또는 고양이)
- (5) 사전신고서 제출
- (6) 신고수리서
- (7) 출국전 임상검사
- (8) 수출국정부기관발행의 증명서 취득

2. 추천장려 조치 등

- (1) 예방주사
- (2) 기생충 구제
- (3) 수송 케이지
- (4) 도착예정 연락
- (5) 수송, 계류에 적합한 건강상태

3. 수입검역

- (1) 도착시 검사
- (2) 계류검사

4. 수입자의 책무

5. 주요공항(항구)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일람.

(별지) : 2010년 4월 15일부터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본에 도착한 개 또는 고양이의 계류기간이 12 시간 이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1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도착 7 개월 이상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1을 갖추지 아니한 개 또는 고양이는 동물검역소 계류시설에서 필요한 기간(180 일 이내)의 계류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우· 미쿰너구리 ·스컹크(skunk)는 도착전의 조치나 증명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180 일간의 계류 검사를 합니다만, 광견병을 발증하고 있는 동물의 도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또 계류 기간 동안 적절한 개체관리와 병이나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 칩 장착 (1(1)참조)과 출국전의 임상검사 (1(7)참조) 및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증명서를 취득 (1(8)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개 등은 검사의 결과 반송이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1. 수입전 준비

다음 순서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1) (2) (3) 및 (7)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1(8)참조). 개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분 (이하, 수입자)은 미리 일본의 추천 증명서양식(Form A, Form C)을 입수하고 조치를 한 수의사에게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해 마지막으로 수출국정부기관의 최종확인을 받는 방법을 권합니다. 증명서의 추천양식은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크로칩 장착

국제표준화기구(ISO) 11784 과 11785 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을 개 등에 장착합니다. 장착 부위는 사용설명서에 따르고, 장착 후에는 확실하게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 광견병예방 주사,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치수 검사를 위한 채혈, 출국전 임상검사시에는 반드시 판독기로 마이크로칩 번호를 읽어들이 개체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이나 장착한 마이크로칩이 ISO11784 과 11785 규격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여 마이크로칩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ISO 규격이외의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에 있어서 판독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도착예정항(공항·항구)의 동물검역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1(8)참조). 일본 도착시의 수입검사에서 마이크로칩 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마이크로칩 번호가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와 대조할 수 없는 동물은, 180 일간의 계류 검사를 합니다. 마이크로칩 번호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와 대조를 할 수 없는 개는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가 없는 것으로서 반송됩니다.

(2) 광견병예방 주사(개 또는 고양이)

주사 시기: 마이크로칩 장착후

마이크로칩 장착후 광견병예방 주사(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갖춘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만을 인정함)를 2 회이상 접종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 이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주사 및 생백신은 현재 조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접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칩 장착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 광견병 예방주사가 유효해서 수속 일수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의 안내를 읽으시거나 동물검역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예방 주사를 맞은 개 또는 고양이는 생후 91일째이상 (태어난 일을 0일째로 함) 이어야 합니다. 또 2 회째 이후의 예방주사는 1 회째 접종일부터 30 일이상 (접종일을 0 일로 함) 지났고 1 회째 예방주사의 유효면역 기간내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 도착일까지로 유효면역기간이 지날 경우는 반드시 예방 주사를 추가 접종해 주십시오.

(3)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개 또는 고양이)

채혈 시기: 마이크로칩 삽입후에 2 회이상 광견병예방 주사(방법은 (2)항)를 접종한 후 (2 회째 접종일도 포함.) 마지막으로 접종한 예방 주사의 유효면역기간내.

일본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지정된 검사시설(이하 지정 검사시설)에 혈액을 보내 광견병의 항체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항체수치 0.5IU/ml(혈청 1ml 당 0.5 국제 단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채혈일부터 2 년간 유효로 간주됩니다. 2 년이내에 일본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채혈일, 지정 검사시설, 검사 결과는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지정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는 일본 도착시에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에 첨부해서 동물검역소에 제출해 주십시오(1(8)참조).

혈액 채취 및 지정 검사시설에 송부는 미리 지정 검사시설에 연락을 취해 검사 신청서와 혈액이 든 용기의 표시방법, 혈청분리 필요의 유무, 수송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행해 주십시오.

혈액의 채취에 대해서는 관독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칩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혈액은 흘러나오지 않도록 된 용기에 넣어 밀봉해 주십시오. 송부 혈액에는 지정 검사시설이 정하는 검사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혈액 채취를 행한 수의사가 서명한 것을 동봉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 검사 시설은 갱신(신규지정 또는 지정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 확인해 주십시오.

(4) 항체보유후의 수출전 대기(개 또는 고양이)

일본 도착시의 계류 기간이 12 시간이내가 되기 위해서는 (3)항의 채혈일로부터 180 일간 이상 경과(채혈일을 0 일로 함) 하는 한편 2 년이내에 개 또는 고양이가 일본에 도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채혈일부터 180 일간이상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부족한 일수를 동물검역소의 계류 시설에서 계류됩니다.

주의)대기기간 동안에 광견병예방 주사의 유효면역기간을 넘을 경우는 반드시 예방 주사를 추가 접종해 주십시오(1(2)참조). 또한, 2 년을 초과해서 일본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다시 채혈을 실시해서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2 회째의 대기기간은 불필요하게 됩니다(별지의 안내를

읽어주십시오.)

(5) 사전신고서의 제출

동물을 탑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일본 도착일 40 일전까지 도착예정공항 (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신고서” (개는 “광견병예방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는 개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 그 밖에 “광견병예방법에 근거하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을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 혹은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고서”와 “변경 신고서”는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계류 검사의 예정에 관해서는 동물검역소가 수입자에게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 전자메일 어드레스)을 명기해 주십시오.(주요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는 5.주요공항 (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일람을 참조).

또한 일본 도착후에 12 시간을 넘는 계류검사가 될 예정이고, 도착예정공항 (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이외에서 계류를 희망할 경우는 신고서 제출시에 알려 주십시오(계류시설 소재지는 3(2)참조).

(6) 신고 수리서

신고서가 접수되면 동물검역소로부터 수입자에 대해 “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 수리서”가 교부됩니다. 수리서는 팩시밀리, 전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자에게 송부됩니다. 신고자 이외에 송부를 희망할 경우는 신고서 제출시에 알려 주십시오.

개 등의 수입검사 신청시에 수리서에 첨부되는 수리번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아울러 개 등의 탑재시에 수리서를 항공회사 등에 제시해 주십시오.

(7) 출국전 임상검사

출국전(가능한 한 탑재전 2 일이내)에 광견병(개는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leptospira))에 걸리지 않았으며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바가 없는 지, 수의사에게 임상검사를 받으십시오 (1(8)참조).

(8)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의 취득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취득하여 일본 도착시에 동물검역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조치한 민간 수의사에 의해 서명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정부기관의 뒷보증(공적기관 수의사 싸인과 공인, 소속 기관명, 싸인한 날짜)이 없으면 일본 도착시에 증명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증명서는 일본의 추천양식(Form A, Form C)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증명서의 추천양식은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주된 기재사항】

(개 또는 고양이)

- ① 마이크로칩 번호(규격, 번호, 삽입 연월일, 삽입부위)

- ②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에 의한 광견병예방 주사(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나서 채혈까지의 예방주사와 채혈 후의 추가접종) (주사접종 연월일, 접종자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 ③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결과(채혈연월일, 채혈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검사시설명 및 지정번호, 항체수치.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를 첨부)
- ④ 광견병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 또는 걸리고 있는 의혹이 없는 것(개는, 광견병 및 렙토스피라병(leptospira)에 걸리지 않았으며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 않을 것)
- ⑤ 광견병이외의 예방주사, 기생충구제(주사접종 조치연월일, 주사접종 조치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백신의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위의 (2)의 마이크로칩 접종전의 광견병 예방주사가 유효해서 수속 일수가 단축되는 경우 및 상기 (4)의 광견병 백신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대기기간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우, 스컹크(skunk), 미국너구리)

- ① 마이크로칩 번호(규격, 번호, 삽입 연월일, 규격, 삽입부위)
- ②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 않을 것
- ③ 기생충 구제(조치연월일, 조치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제품명)

2. 추천되는 조치 등

일본에 수입되는 개 등에 대해서 이하를 추천합니다. 특히 일본 도착시에 12 시간을 넘는 계류 검사를 받는 개 등은 동물의 건강관리와 계류 시설의 위생관리상, 예방주사나 기생충구제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1) 예방 주사

생후 91 일째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는 일본 도착 30 일 이전 (백신의 유효면역기간내)에 다음 예방주사를 권합니다.

개:디스토펜퍼(distemper), 전염성간염(아테노바이러스 2 형태 감염증에 가능),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의 3종 혼합.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병(leptospira),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추천)

고양이: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의 3종 혼합.

또한 생후 91 일째미만의 동물은 수의사의 지도 아래 면역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회수로 가능한 한 접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2)기생충 구제

출국전 (탑재전 4 일이내)에 다음 기생충구제를 권합니다.

외부기생충:진드기·벼룩에게 효과가 있는 약제로 조치하고 수출시의 임상검사에서 진드기나 벼룩이 기생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내부기생충:선충류·촌충류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투여해 주십시오.

(3) 수송 케이지

개 등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도망을 막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 동물은 가능한 한 마리씩 개별의 수송 케이지에 넣음.
- 수송 케이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준하여 동물이 자유롭게 서고 앉고 잠자고 회전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환기에 충분한 통기구멍이 있을 것으로 한다. 또 통기구멍이나 철망부에서 동물의 코끝(눈앞)이나 수족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도망방지 기능을 가진 구조로 한다.

(4) 도착예정연락

도착시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해서 일본 도착 4 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전신고 수리번호, 탑재편 (선)명, 도착예정공항 (항), 도착예정 시각 등을 도착예정공항 (항) 관할 동물검역소에 전화, 팩시밀리 또는 전자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5) 수송, 계류에 적합한 건강 상태

다음의 개 등은 수송, 계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수입할 경우는 사전에 수송 및 계류검사를 견디어낼 수 있는지를 주치 수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 어린 것, 늙은 것
- 임신중이나 수유중의 것
- 기왕증이 있고, 병약, 투약중 (기생충구제 약은 제외함) 혹은 부상을 입고 있는 것 등

3. 수입검역

(1) 도착시 검사

수입자는 개 등이 일본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도착공항 (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 지정 검사시설이 발행한 검사통지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물검역소의 가축방역관이 서류심사와 개 등의 확인을 합니다. 개체식별이 이뤄지고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된 개 또는 고양이의 계류 기간은 12 시간이내가 되고 통상은 단시간으로 검사가 종료됩니다. 개 또는 고양이중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와 여우, 미국너구리, 스킨크(skunk)는 동물검역소의 시설에서 계류검사를 받게 됩니다 (180 일이내). 또 예고없이 채혈 검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계류검사

계류검사는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다른 동물로부터 격리되어 이뤄지고, 광견병에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합니다. 계류기간과 장소는 동물검역소에서 지시합니다만, 특히 희망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는 “신고서”제출시에 알려 주십시오.

계류검사는 동물검역소가 행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도착공항 (항)에서 계류 시설까지의 수송, 계류중의 사육관리, 수의의 왕진, 개 등의 반송·포기·처분과 그 비용은 모두 수입자 부담이 됩니다. 사육관리는 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계류실의 넓이나 시설환경, 입퇴장의 규제 등은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동물검역소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4. 수입자 책무

일본 도착시와 계류기간 동안의 검사를 제외하고 수출국에서의 검사조치, 서류준비, 개 등의 수송, 일본 도착시 수입검사신청절차, 계류검사 동안 개 등의 사육관리, 민간수의사에 의한 진료, 검사 종료후의 절차, 개 등의 인수, 개 등의 반송·처분 등은 수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뤄집니다. 또, 민간수의사에 의한 진료는 왕진만으로 행해집니다. 수입자는 이러한 사항을 양해한 뒤에 개 등을 수입해 주십시오.

5. 주요공항 (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일람(2011년 4월 현재)

주된 공항 (항)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검역장소 명	수입공항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나리타 지소검역 제 1 과	나리타국제공항	0476-32-6664	0476-30-3011	na-k1@aq.s.maff.go.jp
나리타 지소검역 제 2 과		0476-34-2342	0476-34-2338	na-k2@aq.s.maff.go.jp
하네다공항 지소검역과	도쿄국제공항	03-5757-9752	03-5757-9758	haneda@aq.s.maff.go.jp
중부공항 지소	중부국제공항	0569-38-8577	0569-38-8585	meiku@aq.s.maff.go.jp
간사이공항 지소검역과	간사이국제공항	072-455-1956	072-455-1957	ka-ken@aq.s.maff.go.jp
후쿠오카공항 출장소	후쿠오카공항	092-477-0080	092-477-7580	fukuoka@aq.s.maff.go.jp
가고시마공항 출장소	가고시마공항	0995-43-9061	0995-43-9066	kagosima@aq.s.maff.go.jp
나하공항 출장소	나하공항	098-857-4468	098-859-1646	naha@aq.s.maff.go.jp

★문의는 긴급할 경우를 제외하고 FAX 또는 E-mail 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지)

2010년 4월 15일부터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1 마이크로칩 장착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속 일수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비활화 백신의 다른 유전자조작 백신도 인정되었습니다.

(1) 조건

마이크로칩 장착전의 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①)를 접종해 30일 이상 경과하고 유효기간내인 개 또는 고양이.

(2) 유의사항

마이크로칩 장착후, 예방주사①의 유효기간내에 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②)의 접종 및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항체검사)를 위한 채혈을 동시에 실시(마이크로칩 장착도 동시에 해도 상관없습니다.)하고 항체수치가 0.5IU/ml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혈일이 대기기간(180일)의 기점으로 되며, 순서서 1(2)의 2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까지의 기간(30일 이상)이 단축됩니다.

또한, 항체수치가 0.5IU/ml 미만인 경우에는 순서 1에 따라 예방주사②를 접종한 후 30일 이상 및 유효면역 기간 내에 다시 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③)를 접종한 다음 항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필요한 증명사항

안내서의 【증명서의 주요 기재사항】(개 또는 고양이)의 ① 및 ③~⑤외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에 의한 광견병 예방주사

(마이크로칩 장착전의 1회 예방주사, 마이크로칩 장착후의 예방주사 및 채혈후 추가접종)(주사접종 연월일, 접종자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2 이전의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 항체수치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다시 대기나 계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됩니다.

(1)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결과의 유효기간

채혈일로부터 2년간 유효로 간주됩니다.

(2)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항체검사①)의 채혈일로부터

2년간을 경과해서 일본에 도착한 경우

항체수치 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다시 항체검사(항체검사②)의 채혈을 해 주십시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대기 및 계류가 발생합니다.

(3) 유의사항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에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면역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주사를 추가 접종해 주십시오(1(2) 참조).

(4) 필요한 증명사항

항체검사②의 채혈일로부터 180 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안내서의 【증명서의 주요 기재사항】(개 또는 고양이)의 ①~⑤의 기재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항체검사②의 채혈일로부터 180 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내서의 【증명서의 주요 기재사항】(개 또는 고양이)의 ①, ④ 및 ⑤외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①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에 의한 광견병 예방주사
(항체검사①의 채혈일 전에 2 회의 예방주사 및 채혈후의 추가 접종) (주사접종 연월일, 접종자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②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 결과
(상기 항체검사① 및 ②의 결과) (채혈 연월일, 채혈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검사 시설명 및 지정번호, 항체수치,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를 첨부)

If the effective period has expired before second antibody test, consult to Animal Quarantine office in an airport/seaport which your dogs/cats are scheduled to arrive. It may be acceptable when they are satisfied some extra conditions. [From January 1, 2012]